

<업무보고 : 경기신용보증조합>

업 무 보 고

I. 일 반 현 황

☐ 연 혁

- '95. 4. 29 발기인회 구성 (28명)
- '96. 2. 26 설립허가 (통상산업부)
- '96. 3. 19 조합개소 (출연금 226억원) ; 전국최초
- '96. 4. 1 보증업무개시
- '96. 5. 2 재보증계약 체결(신용보증기금)
- '97. 2. 28 지역사무소 개설(의정부, 부천)
- '98. 4. 18 현 이사장 취임

☐ 기구·정원 및 시설

- 기 구 : 1부 3담당 2개사무소
- 정 원 : 26명 (임원 2명, 직원 24명)
- 시 설 : 150평 (무상임차)

☐ 주 요 기 능

-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금융지원 효과를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,
- 도내 중소기업이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, 어음 할인 등 자금유통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

☐ 기 본 재 산

- 금년에 출연금 62억 5천만원, 조합비 3천만원 조성되어 '98. 10월말 현재 기본예산은 462억 8천만원으로 확충

○ 연도별기본재산 확충내용

○ 총 괄

(단위:억원)

구 분	계	'96	'97	'98. 10. 31 현재
계	462.8	241.6	158.4	62.8
출연금	445.5	226.0	157.0	62.5
조합비	3.3	2.7	0.3	0.3
이익잉여금	14.0	12.9	1.1	-

○ 기관별 출연금액

(단위:억원)

출연기관명	연도별 출연금액				구성비(%)
	'96	'97	'98	계	
경기도	100	150	50	300	67.3
시·군	-	-	10.5	10.5	2.3
금융기관	11	6	2	19	4.3
대기업	104	1	-	105	23.6
상공회의소	11	-	-	11	2.5
합 계	226	157	62.5	445.5	100.0

※ '98. 11월 부천시 5억원 추가출연으로 도내 시·군출연금은 15.5억원임

□ '98 예산규모

○ 수입예산 : 54.1억원

○ 보증료수입: 6.3억원

○ 예치금이자수입: 47.8억원

○ 비용예산 : 54.1억원

○ 부문별 내역

(단위:억 원)

구 분	인건비	경비	재보증료	제충당금	구상채권 상각충당 금전입액	법인세	예비비	이월 잉여금
금 액	5.3	6.0	2.5	1.4	25.0	12.5	0.6	0.8

Ⅱ. 주요업무 추진현황

- 정부의 역할증대 및 도정목표에 부응하는 신용보증
- 벤처기업, 수출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등에 우선적 보증지원
⇒ 도내 중소기업자들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

□ 사 업 개 요

- 보증대상: 도내 전중소기업
- 보증종류: 대출보증, 어음보증, 제2금융보증,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,
시설대여보증, 수출지원자금대출보증, 지급보증의보증(7종류)
- 보증한도: 동일 기업당 4억원
- 보 증 료: 보증금액의 연율 1%
- 재 보 증: ○ 재보증기관 : 신용보증기금
 - 재보증금액 : 보증금액의 50%
 - 재보증한도 : 동일 기업당 2억원
 - 재보증료 : 재보증금액의 연율 0.8%

□ 신용보증

- '98 보증목표
 - 연간 보증공급 : 600억원(신규 450억원, 갱신 150억원)
 - 연도말 보증잔액 : 800억원

○ 신용보증지원실적

○ 총 괄

(단위:개, 억 원)

구 분	계	'96	'97	'98. 10. 31현재
업 체 수	838	275	227	336
금 액	1,026	293	262	471

※ 보증잔액 : 563개업체 688억원

- 조합설립부터 '98.10.31까지 838개업체 총 1,026억원 신용보증공급
(업체당 평균보증금액 : 1억 2천만원)

-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경기침체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 보증확대 추진

○ 자금종류별 보증현황

(단위:개, 억 원)

구 분	도 지원자금	시·군지원자금	일반자금등	계
금 액	432	47	209	688
구성비(%)	62.8	6.8	30.4	100.0

- 도 및 시·군지원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이 69.6%로써 조합은 도 및 시·군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보증지원

○ 업종별 보증현황

(단위:억원)

구분	기계장비	석유화학, 플라스틱	조립금속	영상통신	섬유복합의신	자동차품	음식료품	비금속물	목재종이	기타	계
금액	149	111	90	67	64	41	38	33	31	64	688
구성비 (%)	21.7	16.1	13.1	9.7	9.3	6.0	5.5	4.8	4.5	9.3	100.0

• 기계장비 → 석유·화학·플라스틱 → 조립금속순으로 보증지원

□ 대위변제

○ 총괄

(단위:개, 억원)

구분	계	'96	'97	'98. 10. 31현재
업체수	111	2	25	84
금액	119	2	29	88
변제율	-	0.7	6.7	9.7

※ 대위변제액의 50%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전받음

-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및 급격한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중소기업 도산 급증하여 대위변제 증가
- 대위변제기업의 직접적 도산원인은 매출부진(34.4%), 연쇄부도(31.9%), 금융비용부담 가중(8.7%)순으로 나타남
- '98. 10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보증가입에 따른 보전금 총 수입액은 40억원임.

□ 제도개선

○ 대내적 제도개선사항

○ 보증대상기업 확대

- 도내 소재 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단, 비제조업의 총액한도는 제조업 총 보증취급액의 10% 이내
- 시행일 : '98. 9. 18

○ 보증종류 확대

- 대출보증, 어음보증에서 지급보증의 보증, 제2금융보증, 무역어음인수 담보보증, 수출 지원자금 대출보증, 시설대여보증 등으로 확대
- 시행일: '98. 1. 1

○ 실질적 자금지원책 마련 시행

- 목 적 : 보증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
- 내 용 : 제조업에 한해 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철폐 및 심사기준 대폭완화 (연체일수, 신용불량거래처, 재산권침해사실 등)
- 시행기간 : '98. 11. 1 ~ '99. 6. 30(한시적 시행)

○ 수해업체 보증지원 특례취급

- 수해업체에 대하여는 보증금액 5천만원까지 보증한도사정 및 보증심사 완화하여 보증취급

※ '98. 10월말 현재 22개업체 1,049백만원

○ 특례보증제도 도입시행

- 대상기업 : · 경기도 및 재원출연 시·군에서 추천한 기업
· 경기도 부도회생, 예방 특별지원자금 선정기업
- 운용한도 : 당해연도 개시출연금의 10% 이내
(경기도 부도회생, 예방 특별지원자금 및 출연 시·군 추천기업에 대한보증은 별도 운영)
- 동일기업당 한도 : 2억원 (일반보증과 별도운영)

※ '98. 10월말 현재 7개업체 1,374백만원 보증지원

○ 수출기업 보증 우선지원

- 수출기업(제조업)에 대해 보증한도사정 생략하여 보증지원 단, 수출기업 중 비제조업일 경우 5천만원 이하 보증한도사정없이 지원

※ '98. 10월말 현재 126개업체 14,306백만원

○ 보증금액별 연대보증인의 입보자격 대폭 완화

- 소액보증의 경우 필수입보자와 추가입보생략 범위 확대

<기준> 3천만원 ⇒ <확대> 5천만원

- 세액이 경기도지역에서 발생.납부한 경우 입보자격금액의 80% 이상이면 충족

<기준> 5천만원 ⇒ <확대> 1억원

- 개인기업의 대표자도 금액별 입보자격에 충족되는 경우 추가입보 생략 가능

- “직업별 입보자격” 신설로 보증금액별 입보기준 대체가능

○ 벤처기업 우선적 보증지원

- 시설자금 : 영업개시 1년 미만인 벤처기업의 경우 “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” 하더라도 보증지원 가능

- 운전자금 : · 5천만원 이하 - 보증한도 사정 생략

· 5천만원 초과 - 보증한도를 매출액의 1/4에서 1/3로 완화하여 사정

○ 기타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및 보증졸업제 폐지 등

- 임차사업장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생략 등 최소의 서류징구

- 보증졸업제 폐지로 장기정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가능토록 함.

○ 대외적 제도개선사항

○ 재보증한도 확대

- 도·지역신보와 공동으로 정부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에 '97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결과,

-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('98. 2. 12)으로 같은 기업당 재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

⇒ 조합은 정관, 업무방법서 개정 및 신용보증기금과의 재보증계약 변경

체결한 후 같은 기업당 4억원으로 확대 운용(시행일: '98. 3. 27.)

○ 부분보증 협약체결

-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직접대출분에 한해 공단 15%, 조합 85% 보증책임분담을 위한 부분보증 협약 체결

※ 협약체결일: '98. 11. 10.

⇒ 조합의 보증위험 분산으로 신용보증지원 능력 증대 예상

○ 채권보전처분 신청시 담보제공면제기관 지정

- 신용보증기업 도산시 채권자로서 채무관계자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, 가처분 등 신청할 때 법원에서 담보제공요구
- 수원지법에 면제기관지정 건의한 결과 '98. 7월분부터 담보제공면제

※ 지정효과 : '98년 10백만원 이상 비용절감 예상

○ 제도개선 건의사항

- 지역신보 기능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

- '98. 9. 29 정부관계부처 및 정당에 지역신보 기능활성화를 위해 결손보전책, 재보증비율 상향조정, BIS비율개선 및 각종 특별법상 금융기관으로 지정 등 종합적으로 건의

⇒ 보고일 현재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어 상당부분 개선 예상

- 지역신보의 보증서 담보부대출 우대금리 적용건의

- '98. 10. 22 정부관계부처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지역신보의 보증서 담보부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건의

⇒ 관련기관에서 개별은행으로 협조공문 발송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중인 것으로 파악.

○ 제도개선 효과 (중소기업의 경영안정효과)

○ 실질적 경영안정자금지원 효과 창출

- 도내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력 해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

용이하게 되었고, 특히 도, 시·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선적 보증지원으로 자금조달비용 최소화

-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지원 및 재화생산에 직접 필요한 서비스제공업체에까지 자금경색 해소

○수출기업 육성 및 벤처기업 창업 편리

- 수출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요건 대폭완화로 실질적 자금수혜 효과가 있어 창업이 용이하고, 기업경영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대외적 이미지 쇄신하는 등 창업 기업 유치기반 마련.

Ⅲ. 향 후 추 진 계 획

☐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신용보증 중점지원

-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한 우선적 보증지원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
- 자동화, 시설현대화, 기술개발 및 정보화 등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적극적 보증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
- 벤처기업 및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중소기업 발굴 보증 집중지원하여 21세기 지역경제기반 구축

☐ 신용보증능력확대추진 활동강화

- IMF 이후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회수 편리성으로 인해 보증서 담보 선호함에 따라 보증수요 증가 예상.
⇒ 수요에 충족된 보증지원으로 자금난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능력 확대 불가피.
- 정부재정지원 확대 및 금융기관의 범정의무출연금(대출금의 0.3%) 일부 지역신보로 전환 등 「도 및 지역신보협의회」 공동으로 추진
-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출연금의 정례화 및 결손보전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되도록 하여 안정적 보증지원기반 구축

☐ 업무개선 및 경영효율의 극대화

- 업무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지속 추진 및 업무전산화로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성 증대
-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체제 운영으로 업무의 생산성 극대화
-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조직내 업무개선, 발전을 위해 연수기회 확대

IV.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

☐ 특별법제정 시급

- 기존 보증기관은 특별공공법인, 지역신용보증조합은 민법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
 - 대외공신력 부족으로 보증재원확충 곤란 및 BIS위험가중치 산출기준상 불이익 등 제약요인 산재
- 도, 전국지역신보협의회 및 전국 16개 시·도 등과 연대하여 법제정 추진 총력
 - 『지역신용보증조합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』 구성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할 예정.

○ 단계별 법제정 추진계획(안)

제1단계: 시도 공감대 형성 및 법제정 추진 중단 재시동('98. 12월 한)

제2단계: 의원입법 추진 및 특별법 제정('99. 6월 한)

※ 특별법 시행목표: '99 하반기

☐ 재보증비율 상향조정

- 원칙적으로 원보증금액의 50%.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인정시 60% 가능하나, 현재 원보증금액의 50%만 적용
- 간접적 보증지원 재원확충제도인 만큼, 재보증비율 상향조정위해 지속건의

☐ BIS기준 자산위험가중치 하향조정

- 기존 신용보증기관 보증서의 자산위험가중치는 10%인 반면,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보증서는 55%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조합보증서 담보대출 기피
- 또한 금융기관들이 조합의 신용보증서 담보부 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혜택도 주지 않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금리부담 가중
- 특별법 제정 및 결손보전책 마련 시급

V. 건 의 사 항

☐ 안정적 보증지원기반구축 및 BIS비율제고를 위해 「도 조례에 결손보전에 관한 사항」 반영하여 주시고,

☐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 및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 가능토록 「지역신용보증조합법」 제정을 위해 정부관계부처에 지속 건의 요망 등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길 바랍.

VI. '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

☐ 조치내역

○ 처리요구건수 : 4건

○ 조치결과 : 완료 2건, 추진중 2건

☐ 지적(처리)사항

요 구 사 항	조 치 결 과	비 고
○ 조합원 선가입제 도시행용의	○ 조합원 선가입제도는 '97. 4월부터 도입하여 도내 14개 업권별 협동조합에 두차례에 걸쳐 안내문 발송하는 등 기시행함	완 료
○ 사무소기능 활성화 방안 및 남부 지역에도 추가설 치 계획	○ 현행 사무소의 주요기능은 신용보증의 상담, 보증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, 신용보증약정체결, 보증사 고기업의 조업상황 파악 및 재산조사 등이며, ○ 사무소의 기능확대는 곧 예산 및 인력의 증가 가 수반되므로 조합의 재정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 되는 대로 그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며, 설치구역도 확장해 나가겠음	추진중
○ '98출연금 확대 방안	○ '98년도부터 도내 시·군의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도 및 지역신보협의회 공동으로 지속 추진한 결과 '99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 총 245억원 반영되어 지자체와 matching fund의 방법에 의해 '99년도 조합에 출연할 예정임 ○ 향후에도 출연금확대활동 지속 추진	지속추진
○ 업무보고서에 수입 및 지출내용 포함	○ '98년도 업무보고서부터 조합의 예산규모를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음	완 료

Ⅶ. 지역신보별업무현황

(단위:명, 개, 억원, 배, %)

구 분		경기	경남	광주	대구	대전	부산	인천	충남
조 합 형 태		사단 법인	사단 법인	사단 법인	재단 법인	사단 법인	재단 법인	재단 법인	사단 법인
설 립 일		'96.3.19	'96.5.15	'96.6.24	'96.11.7	'97.4.1	'97.6.21	'97.12.29	'98.9.17
업무개시일		'96.4. 1	'96.6. 5	'96.11.1	'96.12.12	'97.6.2	'97.8.1	'98.4.28	'98.10.1
소 재 지		수원	창원	광주	대구	대전	부산	인천	충남
이 사 장		이종일	유강열	양희천	이상경	윤정희	김정규	장순복	최원영
직 원 수		26	13	15	22	16	20	11	11
기 본 재 산	합 계		463	171	172	315	123	221	138
	출 연 체	소 계		446	172	162	309	120	215
		지 자 체	계		311	50	86	150	68
			광역		300	50	80	150	50
			기초		11	0	6	0	18
	금	금융기관		19	20	10	53	7	35
		대기업		105	102	66	100	11	50
		경제단체등		11	0	0	6	35	0
		이월잉여금		14	17	8	6	2	6
	조 합 비		3	6	2	0	0	0	0
보증대상기업체수		20,448	8,200	2,163	7,160	2,185	9,300	7,650	4,500
보증 공 금	업체수		838	380	189	779	374	566	23
	금 액		1,026	414	191	532	224	294	9
보증 잔 액	업체수		563	214	178	593	346	546	23
	금 액		688	226	165	380	204	277	9